

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2년 3월 25일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년 3월 17일, 금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2년 3월 17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3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2년 3월 25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기획재정국장 한만석)

가. 제안이유
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필수 정비 대상인 일본식 한자어를 사용한 조례를 바람직한 행정용어와 표준어로 정비함으로써 구민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 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서 필수 정비 대상으로 선정된 일본식 한자어 순화
 - 1) 노임 → 임금
 - 가)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」 (안 제69조제2호)
 - 나) 「서울특별시금천구민간인실비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」 (안 제4조제1항)

2) 지불 → 지급

가)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」(안 제8조제5항)

나)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」(안 제4조제8호)

다)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」(안 제6조제2항)

3) 감안 → 고려

가)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」(안 제45조제1항제1호)

4) 입회 → 참관

가)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」(안 제73조제2항, 안 제83조의제목 및 제1항, 한 제84조제1항 및 제2항)

가) 「서울특별시금천구민간인실비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」(안 제2조제11호)

○ 제명 띄어쓰기

1) 「서울특별시금천구민간인실비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」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김수

나. 검토의견

○ 검토결과

- 본 개정안은 법령 속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주민이 자치법규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」 등 5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기 위해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,
- 주요내용은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일본식 한자어로 표현되어 있는 용어를 바람직한 우리말 또는 한자어로 정비하는 것임

-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「국어기본법」 등의 관련 근거에 따라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법령문을 주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다듬어 정비하는 것으로 적법·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